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2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12월 15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영의)

□ 제안이유

- 2004. 11.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복식부기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한시기구인 복식부기팀 정원 존속기한이 2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,
- 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을 연장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한시기구인 복식부기팀 정원 10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까지 2년간 연장하여 복식부기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함.(안 부칙 제3조제2항)
- 연장승인 인원 : 10명
 - 행정6급 1, 행정7급 6, 전산7급 1, 행정8급 2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복식부기팀이 한시적 기구인데 기간이 끝날 때마다 매번 연장 승인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?</p>	<p>○ 행정자치부가 승인하는 사항이고 우리시가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운영에 따른 필요인력으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</p>
<p>○ 우리시 말고 타시군중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지?</p>	<p>○ 강남구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</p>
<p>○ 정원을 정례화 시킬 방안이나 상부기관에 정원 승인을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?</p>	<p>○ 아직까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본 적은 없었으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26호
의결 년월일	2004.12.23 (제116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12. 8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2004. 11.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복식부기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한시기구인 복식부기팀 정원 존속기한이 2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,
- 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을 연장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한시기구인 복식부기팀 정원 10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6년 12월 31까지 2년간 연장하여 복식부기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함.(안 부칙 제3조제2항)
- 나. 연장승인 인원 : 10명
 - 행정6급 1, 행정7급 6, 전산7급 1, 행정8급 2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773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중 “2004년 12월 31일”을 2006년 12월 31일“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조례 제1773호 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</p> <p>제3조(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②복식부기 10명은 한시정원으로 <u>2004년 12월 31일까지</u> 둔다.</p>	<p>조례 제1773호 부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</p> <p>제3조(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②----- <u>2006년 12월 31일</u>-----.</p>